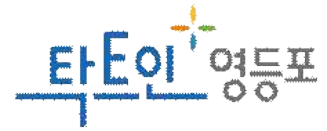


제235회 구의회 임시회

2022. 2. 4. ~ 2. 14.



2022년 주요업무 보고



부 과 과

보고 순서

I . 일 반 현 황	· · · 1
II .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	· · · 3
III . 신규 · 중점 추진사업	· · · 8

I . 일 반 현 황

1 조 직

부 과 과 - (8)개팀

재산1팀	재산2팀	지방소득세1팀	지방소득세2팀	주민세팀	자동차세팀	법인조사팀	주택평가팀
-재산세 총괄 -부동산관련 세원관리 -세입분석 및 자치법규	-취득세총괄 (부동산선박) -등록면허세 (부동산등록) -지역자원시 설세 -부동산관련 세원관리	-지방소득세 (종합소득,양 도소득) -지방소비세	-지방소득세 (법인소득,특 별징수) -법인정산	-주민세(종 업원분,사 업소분,개 인분) -등록면허세 (면허) -레저세	-자동차세 -취득세(차량)	-법인지방세 -법인세무조사 -법인세무발굴 -등록면허세 (법인등기)	-개별주택가 격조사 공시 -건물 및 기 타물건 과세 표준결정공시

2 인 력

구 분	계	일 반 직						관리운영직				별정직 · 임기제				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6급	7급	8급	9급	6급	7급	8급	9급	
정 원	67		1	15	25	15	11									
현 원	63		1	23	23	7	9									
과부족	△4		-	8	△2	△8	△2									

3

주요시설 및 장비

구분	명칭	현황	비고
장비	행정차량	○차종 : 아이오닉 일렉트릭 - 지방세 과세자료 확인 및 조사업무	

4

예산현황

(단위: 천원)

단위사업명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(△)감
계	1,079,573	1,015,379	64,194
세입목표달성	674,025	644,491	29,534
개별주택가격조사	105,742	114,882	△9,140
기본경비	299,806	256,006	43,800

Ⅱ .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연번	사 업 명	쪽
----	-------	---

- ①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4
- ② 법인 세무조사 강화로 세원발굴 추진 6
- ③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 7

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탈루·누락 세원 발굴을 통한 2022년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인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

□ 추진방향

-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징수율 제고 및 신뢰 세정 구현
- 세무조사 및 탈루·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과세 형평성 제고

□ 사업개요

- 추진기간 : 1월~12월
- 사업목표 : 현년도 1,181,710백만원
 - 구세 : 204,745백만원 (21년 대비 15% ↑)
 - 시세 : 976,965백만원 (21년도 목표액이며, 22년 목표액은 22년4월 최종 확정)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'22년	'21년	증감액 (%)	비고
지방세 총계	1,181,710	1,155,009	26,701	
구 세	204,745	178,044	26,701 (15%)	
재 산 세	159,523	140,452	19,071	
등 록 면 허 세	38,240	35,410	2,830	
지 방 소 비 세	6,982	2,182	4,800	
시 세	976,965	976,965	0	
취 득 세	237,743	237,743	0	'22 서울시 예산 확정 후 자치구 배정
지 방 소 득 세	535,983	535,983	0	
자 동 차 세	29,491	29,491	0	
주 민 세	66,603	66,603	0	
기 타	107,145	107,145	0	

□ 세부추진계획

-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합리적 과세행정 운영
 - 다주택자·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세 및 사후관리, 임대주택·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관리,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
 - 지방세법 등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안내 및 홍보
-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세원 탈루 예방
 - 세무종합시스템과 외부 과세자료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세원 관리
 - 비과세·중과세 과세물건 사용현황 현장 확인 등 취약분야 조사 강화
-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통합 신고센터 운영
 -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 가능한 신고센터 운영하여 납세자 편의 제공
- 신고 납부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
 - 지방소득세·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에 안내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발송
 - 상속 및 차량 구조 변경 취득세 납세 의무 발생시 기한내 안내문 발송
 - 자동차세 연납(선납) 신고분 고지서 발송
- 납세홍보 강화
 - 재산세, 자동차세, 주민세 및 등록면허세(면허)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정기분 납세홍보 강화
 - 구 홈페이지, 소식지, 각종 언론매체 등 납세홍보수단 다양화

□ 소요예산: 651백만원(구비 100%)

불성실 신고 및 탈루 개연성 있는 법인에 대한 중점 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및 탈루·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

□ 추진방향

- 세원 탈루·누락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역량 집중
-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·보류 실시

□ 사업개요

- 추진기간: 1월~12월
- 추진목표: 1,989백만원('21년 목표 1,658백만원 대비 20% 증가)
※ 세원발굴 목표액 '22.4월 최종확정

□ 세부 추진계획

- 세원 탈루 취약분야에 대한 직접·기획 세무조사 강화
 - '21년 부동산 취득 법인 대상 취득세 등 적정신고 여부 조사
 - 관외법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지점 설치, 본점 전입 등에 따른 중과세 조사
 - 합병·분할에 따른 지방세 감면법인 일제조사
 -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
 - 법인 등록면허세(등록분) 적정 신고납부 여부 조사 등
- 비과세·감면 부동산 사용현황 조사
 - 지식산업센터 감면 부동산 사용 현황 일제조사
 - 종교용 사용 등 목적 사업 적정 사용 여부 일제조사
- 인터넷(서면) 세무 조사
 - 비대면 세무조사 활성화로 조사자료를 인터넷으로 제출, 세무조사 결과 법인 전자이메일 통지
- 코로나19 피해업종 및 경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연기·보류 신청 시 적극 수용

□ 소요예산: 비예산

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통한 적정가격 결정 및 공시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

□ 사업개요

- 근거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
- 공시대상: 단독·다가구주택, 주상복합건물 내 단독주택
 - ※ 다세대·연립·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: 국토교통부장관 공시
- 공시일: 1월1일 기준(4.29.공시), 6월1일 기준(9.30.공시)

□ 현황

- 조사 대상: 개별주택 14,167호 (표준주택 984호 제외)

전 체	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			미공시주택 (무허가)
	소 계	단독·다가구	주·상복합 등	
14,167호	13,538호	9,592호	3,946호	629호

※2021년 개별주택 가격 상승률: 우리 구 10.78%↑(서울시평균 9.84%↑)

※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: 시세 대비 공동주택 71.5%, 개별주택 57.9%

□ 세부추진계획

- 구체적 실행계획
 - 담당직원 및 조사보조직원 고용·투입하여 현장 전수 조사
 - 적정 표준주택 선정 및 인근주택과의 균형 유지 등 객관적 가격 산정
 - 개별주택 전산자료, 건축물대장, 재산세 과세대장의 상호대사 및 현황조사
 - (절차)특성조사→가격산정·검증→의견수렴→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→공시
- 추진일정
 - 1.1.기준 조사('21. 11월~'22. 4월) ⇒ 가격공시 ('22. 4. 29.)
 - 6.1.기준 조사('22. 5월~'22. 9월) ⇒ 가격공시 ('22. 9. 30.)

□ 소요예산: 189백만원(국 83, 구비 106)

Ⅲ . 신규·중점 추진사업

1 | 친환경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납부 활성화 지방소득세1,2팀

코로나 19 위험 저감, 수기(종이)납부서 감축을 통한 탄소배출 억제 등 환경보호를 위하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수기납부서를 전자납부서로 대체

□ 현황 및 필요성

-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수기납부서 비중
 - '21년 207,192건의 신고 중 18,437건의 수기납부서를 통한 신고납부 (전자납부 비율: 91.1%, 수기납부 비율: 8.9%)
- 사업 추진 필요성
 - 수기납부서를 전자납부서로 대체함에 따라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 보호
 - 수기납부서 세입처리로 행정력 낭비
 - 세입전산처리 지연 및 오류로 인한 납세자 불편 초래

□ 추진계획

- 수기납부서 사용 사업장 대상
 - 수기납부서 사용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전자신고납부 매뉴얼 및 안내문 배포
 - 수기납부분 모니터링 및 지속관리
- 구체적 실행계획
 -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수기납부 이용자 이택스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안내문 발송
 - 수기납부 이용자(해당업체 업무담당자 및 세무대리인)에 유선연락하여 전자납부에 대한 홍보 및 신고 안내
 - 기존 전자신고 안내한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하여 전자납부 독려
- 연차별 실행계획

(단위: %)

구 분	연도별		
	2022년	2023년	2024년 이후
전자납부 활성화 목표	93	95	97 이상

□ 소요예산: 비예산

지방세 감면조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, 신고납부 방법, 기한 등 주의사항을 유선등으로 알려줌으로써 관내 입주해 있거나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사업자와의 소통을 통한 불이익 사전 예방

□ 추진배경

- 지방세 감면 신고 시 대부분 법무사에서 대행신고 하여 실제 납세자는 감면 요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무지, 오인등으로 기 감면 세액 추징 사례 지속 발생
- 지방세 감면 시 납세자에게 안내문자 발송, 감면 유예기간 종료 전 유선 등 사전알림을 통한 감면 세액 추징으로 불이익 사전예방

□ 사업개요

- 추진시기: '22년 지방세 감면발생시
 - 추진대상: '22년 취득세를 감면 * 받은 중소기업 납세자
 - 부동산 감면 취득 후 1~3년간은 사업준비기간으로 납세자가 직접 사용(해당 부동산에 입주)하지 않아도 감면대상임
 - 납세자가 직접사용한 이후에는 매년 현장방문하여 확인
- *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(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), 제58조의 2(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), 제58조의 3(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)

□ 세부 추진계획

- 지방세 감면 신고시 감면 사항 알림
 - 감면 신고 시 납세자(법인의 경우 대표자)의 핸드폰 번호 확보
 - 감면 신고 후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 문자 발송
- 감면 유예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
 -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2개월 전 유선 등 연락하여 사전알림
 - 감면조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, 신고납부 방법, 기한 등 세부사항 알림

□ 소요예산: 비예산